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2-15

제 주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1구합570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피 고	○○○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	2023. 7. 25.
판 결 선 고	2023. 9. 5.

주 문

1. 피고가 2020. 9.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취득세 5,187,398,110원, 농어촌특별세 452,117,3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2-15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16. 11. 14.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발행주식 1,000주, 1주의 금액 1,000원, 자본금 1,000,000원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설립 당시 주주명부상 주주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주주	주식	지분
A	490	49%
㈜C[1]	400	40%
D	110	11%
합계	1,000	100

나. ○○○시 E 외 2필지 소재 연립주택 14세대(① F동 G, H, I, J, K, L호, ② M동 G, H, I, J, N, K, L호, ③ O동 G호) 및 P 소재 단독주택 1세대(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는 주식회사 Q(이하 'Q'라 한다)의 소유였는데 이 사건 회사가 2016. 11. 1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짜의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7. 2. 15. C와 D이 보유하였던 이 사건 회사 총 발행 주식의 51%(C 400주, D 110주,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를 마쳤다.

라. 피고는 2020. 9. 9.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이 사건 회사의 100% 과점주주가 되었음에도 구 지방세법(2023. 3. 14. 법률 제19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5항에 따라 원고가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1) 이하 'C'라 한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2-15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위 부동산의 장부상 가액 합계 33,664,729,37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5,187,398,110원(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452,117,310원(납부불성실 가산세 포함) 등 합계 5,639,515,420원(이하 '이 사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내려지기 전 2020. 7. 15. ○○○○도지사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도지사는 2020. 8. 20. 위 청구를 불채택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이 사건 처분 후 2020. 11.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도 2021. 4. 8.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바. 한편 Q는 원고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R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그 내용은 '원고와 R이 이 사건 회사의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200억 원(부가가치세 제외) 상당에 매수하였는데 계약금으로 2016. 11. 18. 80억 원, 중도금으로 2017. 1. 6. 6억 원, 2017. 1. 25. 10억 원 총 96억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04억 원은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바, 처음부터 위 대금 200억 원을 모두 지급할 의사와 능력 없이 Q 측을 기망하여 편취한 것'이라는 취지였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8형제76590호 사건). 그런데 검사는 2018. 6. 28. '매수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많은 하자가 발견되었고, 그 보수공사 견적서 상 비용이 110억 원에 이르는 등 특별한 사정변경이 발생하여 원고와 R이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원고 및 R에게 각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하였다(이하 '관련 형사 불기소 사건'이라 한다).

검사는 이후 원고를 관련 형사 불기소 사건과 별개로 피해자 주식회사 S(변경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2-15

전 상호 주식회사 T, 이하 'S'이라 한다)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으로 기소하였는데(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합1094호 사건), '원고가 이 사건 회사를 이용하여 자금을 융통한 후 S을 인수하고 S의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등이 그 범죄사실의 요지이고, 현재 위 사건은 재판 계속 중에 있다(이하 '관련 형사 기소 사건'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제5, 6, 10, 11, 1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C와 D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이를 해지하고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에 원고 앞으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를 하였는데, 이는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여 구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취득세 부과대상인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위 회사의 과점주주 지위에 있게 되었다고 보아 피고가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2)]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관련법리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전문은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에 관하여 '법인의 주식을

2) 원고는 '피고는 이 사건 처분 시 과세표준을 이 사건 부동산의 실거래가인 222억 4,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이 아니라 이 사건 회사와 Q의 합의 하에 허위로 부풀린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였는바 이는 지방세기본법 제17조 제2항 상의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를 마친 것은 실주주의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이상 과세표준의 산정의 위법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별도로 살피지 아니한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2-15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과점주주란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정한 바와 같이 주주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를 말한다. 그리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3. 3. 14. 법률 제333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은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가 다른 주주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실질과세의 원칙 중 지방세기본법 제17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실질귀속자 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전문이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그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점주주가 되면 해당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담세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므로, 위 조항에 의하여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주명부상의 주주 명의가 아니라 그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2-15

원 2018. 11. 9. 선고 2018두49376 판결 참조).

라.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갑 제4, 8호증, 제12 내지 15호증, 제17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부터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주주로서 C 및 D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2017. 2. 15. 위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상 이 사건 주식의 주주명의를 원고 명의로 회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여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취득세 부과대상인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1) Q 부사장 U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R, 원고는 2016. 11. 18. Q가 이 사건 부동산을 이 사건 회사에 대금 32,242,158,513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당시 양 회사 사이에 별도로 작성된 이행합의서 및 관련 형사 불기소 사건에서 R과 U가 수사기관에서 한 각 진술 등에 의하면 ① 이 사건 회사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세운 특수목적법인인 사실, ② 위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 Q 측과 원고 사이에 실제 합의된 매매대금은 부가가치세 제외 200억 원 상당이었는데 원고가 이 사건 회사를 통해 추후 부가가치세 부정환급 및 고액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위 계약서 상 매매대금을 부풀려 기재한 사실이 인정된다(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회사와 Q 사이에 실제로 이루어진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6. 11. 18. V조합으로부터 120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2-15

억 원을 빌린 후 그 중 80억 원을 같은 날 Q에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으로 지급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당시 V조합은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그 명의의 물적 담보를 전혀 제공받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해 원고는 'V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 명의로 돈을 빌리면서 위 차입금에 대한 담보로 V조합이 지정하는 D과 C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중 과반에 해당하는 51%를 명의신탁하고 차입금을 변제하면 위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원고 명의로 회복하기로 위 조합과 합의하였다. 위 합의에 따라 이후 주식회사 W(이하 'W은행'이라 한다), X조합으로부터 각 대출을 받아 위 차입금을 변제한 후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명의개서를 받은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각 등기부등본, 이 사건 회사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 계정별원장, 관련 형사 불기소 사건 수사보고서 등에 의하면 실제로 ① 이 사건 매매계약 후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을 Y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Z 주식회사)에 신탁하고 2017. 1. 9. 주식회사 W(이하 'W은행'이라 한다)에 1순위 우선수익권을 설정해주면서 55억 원을 대출받았고, 같은 날 X조합에 1순위 우선수익권을 설정해주면서 50억 원을 대출받은 사실, ② 이 사건 회사는 위 대출금 등으로 V조합에 2017. 1. 9. 100억 원, 2017. 1. 25. 20억 원을 각 지급한 사실, ③ 이후 2017. 2. 15. C와 D이 보유하였던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모두 원고 명의의 명의개서가 마쳐친 사실, ④ 2017. 2. 17.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가 501,000주로, 자본금이 501,000,000원으로 각 변경등기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에 ① 이 사건 회사의 설립당시 자본금 1,000,000원은 모두 원고가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2-15

납입하였고, D이나 C가 위 회사에 출자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② V조합이 아무런 담보도 없이 이 사건 회사에 120억 원이나 되는 거액을 빌려 주었을 리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관련 형사 불기소 사건에서 R과 이 사건 회사의 직원이었던 AA은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부터 원고가 위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이자 1인 주주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보태어 고려하면 원고의 위 주장은 신빙할 만하다.

3) 2021. 2. 23. C의 대표자 겸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위 회사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 AB은 2021. 3. 12. 원고에게 'C는 V조합의 관련 회사로서 원고가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할 당시 V조합이 위 회사에 대여해준 120억 원을 담보할 목적으로 위 회사 주식 51% 중 40%의 명의상 주주가 된 바 있다. 원래 V조합은 이 사건 회사를 통하여 원고에게 총 200억 원을 대여해주기로 하였으나, 1차로 120억 원을 대여해 준 후 이 사건 회사와 위 조합 간에 대여 조건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하여 2017. 1.말경 1차 대여원금 전액을 변제받은 다음 이 사건 주식의 명의를 원고에게 되돌려주었고, 2차 대여는 무산되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4) 관련 형사 기소 사건의 공소사실에도 '원고가 2016. 11. 개인회사인 이 사건 회사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양수하면서 실제 합의된 매매대금은 200억 원임에도 322억 여 원으로 부풀리는 "업" 계약을 체결한 후 위 부동산을 신탁하고 금융기관에 수익권증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대출받았고, 이러한 대출금의 일부는 원고가 S 등을 인수하는 데에 사용되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5) 이 사건 회사 설립당시 D과 C의 당시 대표이사였던 AC이 각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된 바 있고(D은 2017. 2. 16., AC은 2017. 7. 20. 각 사임), AC은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2-15

2017. 1. 24. 이 사건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도 등재된 바 있으나(2017. 2. 10. 사임), D과 C가 이 사건 회사의 주주로서 의결권 등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다.

마. 소결

따라서 원고가 2017. 2. 15. D과 C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여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가 되었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는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2-15

관 계 법 령

▣ 지방세기본법

제17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가 서류상 귀속되는 자는 명의(名義)만 있을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한다.

②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46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의 경우에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 구 지방세법(2023. 3. 14. 법률 제19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법인이 「신탁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2-15

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 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를 준용한다.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3. 3. 14. 법률 제333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끝.